

제 2347호
2015. 02. 16.

발행인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
편집인: 공 보 실 장 장 운 기
전화: 3396-4965
(<http://www.junggu.seoul.kr>)

선	기관의장
람	

구 보

● 공 고

제2015-119호 : 도시관리계획(북창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소공동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 결정(변경)(안) 열람공고... 2
제2015-130호 : 서울특별시 중구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(안) 열람공고 5

- 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
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<http://www.junggu.seoul.kr>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>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65 / FAX.(02)3396-9024
- 구보는 수시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
- 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													
람													



공 고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-119호

도시관리계획(북창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소공동 특별계획구역

세부개발계획) 결정(변경)(안) 열람공고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312호(2014.09.04)로 결정된 북창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소공동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『소공동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』결정을 위한 주민제안에 따라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7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.

2015. 2. 11.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열람기간 : 신문공고일 익일부터 14일간
2. 열람장소 : 중구청 도심재생과 (☎ 3395-5782, FAX : 3396-4343)
3. 열람내용 : 북창 지구단위계획 및 소공동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(변경)(안)

가. 특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구 역 명	위 치	면 적 (㎡)			비 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기 정	소공동 특별계획구역	중구 소공동 112-9번지 일대	6,562	-	6,562	

나.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	면 적(㎡)			구성비(%)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 계		6,562	-	6,562	100.0%	
상업지역	일반상업지역	6,562	-	6,562	100.0%	

다.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1) 교통시설

■ 도로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대로	3류	112	20~25	주간선 도로	350 (250)	시청앞 광장	한국은행앞	일반 도로	-	-	

※()는 특별계획구역 내 연장임

■ 지하도로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적(㎡)			폭원 (m)	연장 (m)	최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		
신설	1-a	도로	지하 도로	소공동	-	-	(159.9)			-	• 공공공지3과 중복결정 (81.47㎡)

※지하도로 제원은 관리청과 협의하여 금회 결정하도록 함

※()는 특별계획구역 내 사항임

※지하도로 면적은 구적면적이며 추후 측량 등을 통하여 결정

■ 입체적 결정조서

구분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입체적 결정 규모			비고
				구분	높이(m)	면적(㎡)	
신설	도로	지하 도로	소공동 112-9번지 일대	지하1층	+29.5~+34.0 (해발고도)	151.53	지하상가로 출입하는 시설
				지하2층	+25.0~+29.5 (해발고도)	81.47	지하층 연결통로

※입체적 결정 규모는 추후 측량 및 실시계획을 통하여 결정

2) 공간시설

■ 공공공지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위치	면적(㎡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②	공공공지	소공동 112-26	104	-	104	2005.9.1 (서고 제2005-263호)	
신설	③	공공공지	소공동 112-9	-	-	123.7	-	지하도로와 중복결정 (81.47㎡)

라.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 : 생략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

4. 관계도서 : 게재생략(열람장소에 비치)

※ 의견제출 :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서면또는 e-mail

: kyungil1969@junggu.seoul.kr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◎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-130호

서울특별시 중구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(안) 열람공고

1. 서울특별시 중구내 옥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방지하고 용도지역 등 생활환경에 맞게 빛밝기를 차별화하여 주거민의 수면장애 해소, 동·식물의 생태계 보호, 불필요한 빛으로 인한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고자「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」제9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「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」제8조 규정에 의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(안)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.
2. 본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5년 2월 16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가.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(안)

- 1) 지정위치 : 서울특별시 중구 전역
- 2) 지정대상 : 옥외 인공조명(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시행령 제2조)
 - 가) 공간조명 : 가로등, 보안등, 공원등
 - 나) 광조조명 : 전체 광고물 중 허가분만 대상(전광류 등 동영상 간판, 돌출간판, 10m이상 가로형 간판 등)
 - 다) 장식조명 : 건축물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,000㎡이상, 교량, 숙박시설 등
- 3) 지정면적 : 9,970,000(㎡)

조명환경 관리구역	용도지역 등 이용현황	면적(㎢)	비율(%)
합계	중구 전역	9,970,000	100
제1종	보전녹지지역, 자연녹지 (국립공원, 도시자연공원, 생태경관보전지역, 야생생물보호구역, 묘지공원)	2,145,629	21.5
제2종	생산녹지, 자연녹지(1종 제외지역)	-	0
제3종	전용주거, 일반주거, 준주거지역	4,203,994	42.2
제4종	상업지역, 공업지역	3,620,377	36.3

4) 조명환경관리구역내 인공조명별 빛방사허용기준(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)

종별구분	빛방사허용기준	
제1종	· 공간조명(창문): 10[lx] 이하 · 광고조명 : 50 [cd/m ²]	· 장식조명 : 20 [cd/m ²] · 전 광 류 : 400 [cd/m ²]
제2종	· 공간조명(창문): 10[lx] 이하 · 광고조명 : 400 [cd/m ²]	· 장식조명 : 60 [cd/m ²] · 전 광 류 : 800 [cd/m ²]
제3종	· 공간조명(창문): 10[lx] 이하 · 광고조명 : 800 [cd/m ²]	· 장식조명 : 180 [cd/m ²] · 전 광 류 : 1,000 [cd/m ²]
제4종	· 공간조명(창문): 25[lx] 이하 · 광고조명 : 1,000 [cd/m ²]	· 장식조명 : 300 [cd/m ²] · 전 광 류 : 1,500 [cd/m ²]

※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전에 설치된 조명기구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명 환경관리구역 지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5) 지정방법: 용도지역, 토지이용현황등을 고려하여 제1종~제4종으로 구분 지정

구 분	정 의	용도/토지이용현황	예 시
제1종	빛공해가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	보전녹지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	도봉산, 남산 국립묘지 등
제2종	빛공해가 농림수산업의 및 동식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	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(1종 제외)	근린공원 등
제3종	빛공해가 국민의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	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	주거지역
제4종	상업활동을 위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	상업지역 공업지역	상업, 공업지역 관광특구

나. 열람기간 :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

다. 열람장소

-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디자인과(☎3396-5953, fax:3396-4346)
-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(도시빛정책추진반)(☎2133-1926, fax: 2133-0738)

라. 관련도서(열람장소 비치)

- 1) 서울특별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계획서 1부.
- 2) 서울특별시 중구 조명환경관리구역 도면 1부.
- 3) 서울특별시(자치구)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조사결과 1부. 끝.